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44

발의연월일: 2024. 8.5.

발 의 자: 김도읍 · 신동욱 · 인요한

김정재・구자근・조지연

권영세 • 유상범 • 서지영

박정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와 관련하여 「의료법」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.

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, 「의료법」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1조 및 제41조).

법률 제 호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"수의사"를 "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"로 한다.
제41조제1항제1호 중 "사람"을 "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11조(진료의 거부 금지) 동물진	제11조(진료의 거부 금지)			
료업을 하는 <u>수의사</u> 가 동물의	<u>수</u> 의사 또는 동물			
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	<u>병원 개설자</u>			
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				
아니 된다.				
제4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41조(과태료) ①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			
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			
부과한다.				
1.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	1			
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				
를 거부한 <u>사람</u>	<u></u> <u> </u>			
2. • 3. (생 략)	2. • 3. (현행과 같음)	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	